

【 14 】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2. 20.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주군과 의료보험조합간의 업무추진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군수 및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지소의 설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피보험자의 신상이동 현황 제공 등을 지원토록 함. (안 제2조)
-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규칙을 제정 운영토록 함. (안 제3조)
-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한 각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안 제4조)
- 지소 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규정 위반시에는 읍·면장이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 의료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읍·면장은 지소 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 군수 및 읍·면장(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읍·면 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협조

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입 신고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출생, 사망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 협조

② 리·반장은 피 보험자의 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소재 파악과 자격확인 업무에 협조한다.

③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규정 제정등) ① 군수는 읍·면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소집, 의결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읍·면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등)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① 지소직원은 의료보험 업무 수행중 지득한 비밀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절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 의료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복무관리) 읍·면장은 지소직원의 복무 상황을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38編 社會福祉 第6章 社會保險 醫療保險法

또는 療養給與費用의 算定基準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하였거나 保險給與費用을 請求한 때에는 1年이하의 免許資格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에서 종사하는 者가 第1項의 행위로 인하여 保險者 또는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에게 부당하게 保險給與費用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保險給與費用의 10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稅徵收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95·8·4>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的인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第78條 (聽聞) 保健福祉部長官은 第7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8·4>

第79條 (祕密의 유지) 保險者 또는 保險者團體에 종사하였던 者 또는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 된 祕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0條 (組合에 대한 監督) 保健福祉部長官은 組合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財產狀況을 檢查하여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 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81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特別市長 ·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第76條 및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중 療養機關에 대한 保險給與關係資料의 제출요구와 組合에 대한 指導 · 監督에 관한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8·4>

第82條 (業務의 委託) ①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險料收納 및 保險給與費用의 지급에 관한 業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地域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일부를 地方自治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38編 社會福祉 第6章 社會保險 醫療保險法

第83條 (外國政府勤勞者 및 外國人에 대한 特例) ①外國政府가 使用者인 事業場의 勤勞者에 대한 醫療保險에 관하여는 外國政府와의 合意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國內에 永住하는 外國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內事業場에 근무하는 外國人은 本人의 願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는 被保險者로 될 수 있다.

第8章 罰則

第84條 (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위반한 使用者 또는 第7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 정당한 사유없이 第67條 · 第74條第1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의 제출 · 의견의 陳述 ·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허위로 陳述 · 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 檢查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第86條 (罰則) 第15條(第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第32條第5項 또는 第36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7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 使用人 기타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5條 또는 第8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8條 (過怠料) ①정당한 사유없이 第16條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設立의 認可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遷延된 기간의 被保險對象者 報酬總額의 1,000分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5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險料를 지정하는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額의 100分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被保險者 또는 被扶養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을 잃은 후 그 資格을 증명하던